

	성과상여금지급규정	문서번호	MSU-
		제정일자	2012. 12. 3.
		최종개정일자	2018. 5. 14.
		담당부서	행정지원처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목포과학대학교 교직원에게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경우 지급기준, 지급절차 등을 정하여 공정하고, 원활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재직 중인 전임교원 및 일반직원(이하 “교직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단, 평가기간 재직 중인 정년퇴직, 명예퇴직, 희망퇴직자도 포함한다.

제3조(지급시기) 성과상여금 지급 시기는 다음과 같다.

1. 성과상여금은 전 학년도(3월1일~익년 2월28일)의 성과를 평가하여 연 1회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성과상여금은 1학기 중에 지급하며, 필요한 경우 변경할 수 있다.

제4조(지급액) 성과상여 지급액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성과상여금은 교직원별 평가된 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2. 성과상여금의 총지급액과 등급별 지급액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총장이 정한다.

제5조(지급방법) ①교직원의 성과상여금 지급은 교원성과평가 및 직원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한다.

②성과상여금의 지급등급 및 인원비율은 아래와 같다. 단, 총장은 업무특성상 필요한 경우 평가된 교직원의 등급을 조정할 수 있으며, 평가할 수 없는 경우 따로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 교직원 성과평가에 따른 등급과 인원비율

등급	S급	A급	B급	C급
인원비율	10%	50%	30%	10%

제5조의2(총장의 성과상여금) <신설 2018. 5.14>

① 총장에게 성과상여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항목의 성과지표에 따라 등급을 정하여 지급한다.

1. 신입생 충원율
2. 재학생 충원율
3. 졸업생 취업률
4. 재학생 교육만족도

② 제1항 각 호의 항목이 전 학년도 대비 상승 1점, 하락 -1점, 전 학년도와 동일 0점으로 계산하여 각 항목 점수의 합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등급을 정한다. 다만, 지표 값이 100%인 항목은 1점으로 계산한다.

1. 3점 이상 : 직전 등급보다 한 등급 위 등급
2. -2점 ~ 2점 : 직전 등급과 같은 등급
3. -3점 이하 : 직전 등급보다 한 등급 아래 등급

제6조(지급대상제외) 성과평가 해당 기간 중 징계(견책, 감봉, 정직, 강등, 해임, 파면 등),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교직원은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제7조(성과상여금심사위원회) ①성과상여금심사위원회는 당연직 위원 기획산학처장, 교무 입학처장, 행정지원처장과 총장이 임명하는 교원 2인, 직원 1인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기획산학처장이 된다.

③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위원회의 사무는 서무과장이 한다.

⑤위원회는 성과평가 순위와 등급을 심사하여 정하고, 교원과 직원을 구분하여 성과 상여금 지급순위명부<별표 1>를 작성 의결한다.

제8조(성과상여금심사위원회운영)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동점자 처리) 평가 결과 2인 이상의 동점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등급별 비율 인원이 초과 되더라도 동일 순위로 인정하며, 동일급으로 지급한다.

제10조(지급등급결과 열람과 이의제기) ①성과상여금심사위원회는 성과평가심사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고, 총장은 성과상여금 지급전에 교직원 개인이 심사결과를 열람하여 이의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②본인의 지급등급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교직원은 성과상여금심사위원회에게 이의 신청서<별표 2>를 작성하여 이의제기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이의신청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재심사를 하여 평가된 등급과 지급률을 재조정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 지급순위와 지급등급을 조정하는 경우 이의를 재기하지 않은 자의 지급 등급은 변경하지 않도록 한다.

부 칙

1. (시행일) 본 규정은 2013년도 성과상여금 지급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본 규정은 2014년 4월 3일부터 시행하며, 2014년도 성과상여금 지급부터 적용한다.

부 칙

1. (시행일) 본 규정은 2017년 8월 9일부터 시행하며, 2017년도 성과상여금 지급시 적용한다.

부 칙

1. (시행일) 본 규정은 2018년 5월 14일부터 시행하며, 2018년도 성과상여금 지급시 적용한다.

〈별표 1〉

성과상여금 지급 순위 명부(교원)

[illegible]

성과상여금 지급 순위 명부(직원)

[illegible]

〈별표 2〉

이 의 신 청 서

소속		직급		성명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이의신청사유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관련 증빙 자료 첨부)					
기타 참고사항					
위와 같이 「성과상여금 지급 규정」에 의거 이의신청을 합니다. 20 년 월 일 이의신청인 : 직급 성명 (서명) 성과상여금심사위원회 귀하					